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 
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전승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2. 11. 2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

##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77호로 2022년 11월 10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보험 가입 및 대상(안 제3조)

다. 보험회사의 선정(안 제4조)

라.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(안 제5조 ~ 제6조)

마. 보험금 청구(안 제7조)

바. 보험금 지원 제외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 (2022. 11. 2. ~ 11. 9.)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전임.
- 조례 제정의 배경 및 취지를 살펴보면
  - 우리나라는 2005년 4월 장애인 보장구 급여항목에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가 포함된 이후로 장애인의 활동성 증가와 사회적 참여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비용 및 안전사고의 증가 등 여러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음<sup>1)</sup>.
  - 언론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에 따른 사고 증가로 장애인의 심리·경제적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, 지자체에서 보험 지원을 나서고 있으며

**‘위험천만 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 ... 지자체, 보험 지원 나섰다 \_ 한국일보’22.2.7.보도**

- 장애인 전동보장구 현행법상 ‘차마’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 이용 필수
- 인도가 좁거나 경사가 있고 장애물 설치 등으로 인도 이용 불편, 조심해도 접촉 사고 빈번
-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증가하나, 법제화 되지 않아 지자체 보험 지원 도입

1)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이용 실태 조사 (노지영 외 6인 \_ 한국의지·보조기 학회지: 제12권 제1호 2018)

- “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” 관련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,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음.

연번	조례명	공포일
1	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	2021. 9. 24.
2	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	2022.10. 27.
3	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	2021. 11. 4.
4	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	2021. 11. 4.
5	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	2021. 7. 15.

-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사료됨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」 이고 9개의 본칙 조문 및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를

규정하고, 보험의 세부적인 내용인 보장기간, 보험료, 보장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금 청구, 보험금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보험증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험증권 및 관련 서류를 보관·관리하도록 규정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장애인복지법

**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